농림축산식품부	보 도 자 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2023. 1. 31.(화) 11:00 2. 1.(수) 조간	배포 일시	2023. 1. 31.(화) 09:00
담당 부서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책임자	과 장 조경규 (054-912-0150)
		담당자	사무관 이승일 (054-912-0165)

2022년 불법 종자·묘 유통 84업체 적발 조치

- 2023년에는 수입 및 인터넷 판매 종자 유통조사 강화 -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2022년도 종자·묘를 취급하는 전국 3,467개 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종자산업법 위반 84업체를 적발하여 검찰 송치 및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하였다.

* 3,467업체: 채소 1,918, 화훼 905, 과수 396, 식량 91, 특용 등 기타 142, 버섯 15

** 처분내용(84건): 송치 18건, 고발 1건, 과태료 59건, 계도 6건

국립종자원은 매년 작물별 종자·묘 유통 성수기*에 맞춰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채소·씨감자·화훼 등을 집중 조사하여 전년 같은 기간(2,466업체/72건) 대비 적발업체 수가 16.7% 증가하였다.

* 작물별 유통조사 시기: 씨감자(2~3월·6~7월·10~11월), 과수묘목(3~4월), 채소종자(3~4월·7~8월), 묘(3~5월·7~9월), 버섯종균·영양체·화훼·특용·사료작물 등(수시)

주요 위반 사항은 종자업 미등록, 미보증 종자 판매, 품질 미표시 등이며, 위반 업체는 위반 사항에 따라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10만 원~1,000만 원) 처분을 받게 된다.

* 작물별 위반업체수(84): 채소 40(48%), 특용 등 기타 10(12), 식량 10(12), 화훼 15(18), 과수 8(9), 버섯 1(1)

** 업종별 위반건수: 종자판매상 등 63건(75%), 종자업자 19건(23%), 육묘업자 2건(2%)

또한 종자·묘 분쟁과 관련하여 57건의 상담을 하였으며, 작물 시험·분석*과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해결하였다.

* 작물 시험·분석: 유전자분석, 재배시험, 종자의 품질검사 등을 통하여 분쟁의 원인을 파악

최근 가정 원예(홈 가드닝, home gardening)와 반려식물 및 희귀 수입 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인터넷을 통한 종자·묘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불법 종자·묘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민원이 함께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국립종자원은 수입 및 인터넷 판매 종자 증가 등 유통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넷 전담인력을 사이버전담반으로 확대 개편하고 수입되는 모든 종자에 대해 종자·묘 유통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경규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장은 “앞으로도 종자·묘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여 유통 질서를 바로잡아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으며, “관련 업계도 건전한 종자 유통시장 조성을 위해 적법한 종자만 유통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종자·묘 유통관리제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종자 · 묘 유통관리제도**

종자란?

증식용 또는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섯 종균(種菌), 묘목(苗木), 포자(胞子) 또는 영양체(營養體)인 잎·줄기·뿌리 등

종자업 등록

종자를 생산·가공 또는 다시 포장(包裝)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업(業)으로 하려면 **시설·장비를 갖추고 종자관리사를 두어**, 주된 생산시설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종자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종자산업법 제37조)

종자업의 시설기준(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3조)

공통

시설	ᐡ 개별기준의 시설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5년 이상의 임차권 등의 사용권을 확보할 것. 다만, 종자를 가공하여 판매만 하거나 종자를 다시 포장(包裝)하여 판매만 하는 경우에는 개별기준의 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장비	ᐡ 개별기준의 장비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임차권 등의 사용권을 확보할 것. 다만, 묘목 및 영양체만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개별기준의 장비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개별

채소

시설	ᐡ 철재하우스: 330㎡ 이상일 것 ᐡ 육종포장(育種圃場): 3,000㎡ 이상일 것
장비	ᐡ 정선기, 건조기, 포장기, 수분측정기 및 발아시험기 각 1대 이상일 것

과수

시설	ᐡ 묘목포장(苗木圃場): 7,000㎡ 이상일 것 ᐡ 어미나무: 결실되는 나무 품종당 5그루 이상이 자기 소유일 것. 다만, 종자 관련 검정기관이 병해충이 없음을 인정한 어미 나무에서 생산된 접수(接穗)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어미나무를 구비하지 않아도 된다.
장비	ᐡ 정선기, 건조기, 포장기, 수분측정기 및 발아시험기 각 1대 이상일 것

화훼

시설	ᐡ 교배방법의 경우 • 철재하우스: 330㎡ 이상일 것 • 육종포장: 3,000㎡ 이상일 것 ᐡ 조직배양방법의 경우 • 실험실: 100㎡ 이상일 것 • 현미경(500배 이상일 것): 1대 이상일 것
장비	ᐡ 정선기, 건조기 및 포장기 각 1대 이상일 것

버섯

시설	ᐡ 실험실 : 16.5㎡ 이상일 것 ᐡ 준비실 : 49.5㎡ 이상이며, 수도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 ᐡ 살균실 : 23.0㎡ 이상일 것 ᐡ 냉각실 : 16.5㎡ 이상이며, 에어컨시설 또는 냉각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 ᐡ 접종실 : 13.2㎡ 이상이며, 무균상태를 지속할 수 있는 시설 및 자외선 등이 설치되어 있을 것 ᐡ 배양실 : 165.0㎡ 이상이며, 실온을 20~25℃로 조정할 수 있는 항온장치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 ᐡ 저장실 : 33.0㎡ 이상이며, 실온을 1~5℃로 조절할 수 있는 냉각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
장비	ᐡ 실험실 : 현미경(1,000배 이상) 1대, 냉장고(200ℓ 이상) 1대, 소형 고압살균기 1대, 항온기 2대, 건열 살균기 1대 이상일 것 ᐡ 준비실 : 입병기 1대, 배합기 1대, 자숙솥 1대 (양송이 생산자만 해당한다) ᐡ 살균실 : 고압 살균기(압력: 15 ~ 20LPS, 규모: 1회 600병 이상일 것), 보일러(0.4톤 이상일 것)

식량작물(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

시설	ᐡ 철재하우스: 330㎡ 이상일 것 ᐡ 육종포장: 3,000㎡ 이상일 것
장비	ᐡ 현미경(1,500배 이상일 것), 정선기, 포장기, 발아시험기(감자 제외), 건조기(감자 제외) 및 수분측정기(감자 제외) 각 1대 이상일 것

그 밖의 작물(사료작물 및 특용작물 등)

시설	ᐡ 육종포장(1,000㎡ 이상일 것)
장비	ᐡ 정선기, 포장기, 건조기(인삼 제외) 각 1대 이상일 것

종자관리사를 두어야 종자업 등록을 할 수 있는 작물(39종)

식량작물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
과수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자두, 매실, 참다래, 감귤
채소	무, 배추, 양배추, 고추, 토마토, 오이, 참외, 수박, 호박, 파, 양파, 당근, 상추, 시금치
버섯	양송이, 느타리버섯, 봉나무버섯, 영지버섯, 만가닥버섯, 잎새버섯, 목이버섯, 팽이버섯, 복령, 버들송이, 표고버섯

품종 생산·수입 판매 신고

품종보호 출원공개된 품종, 국가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 외의 종자를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종자를 정당하게 취득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와 종자시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종자산업법 제38조)

신고방법 우편/방문/온라인 www.seednet.go.kr
신고문의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 054-912-0115

종자의 품질표시

국가보증 대상이 아닌 종자나 자체보증을 받지 아니한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는 자는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사항을 **품질표시** 하여야 합니다.(종자산업법 제43조)

① 품종명 ② 무게 또는 낱알 개수 ③ 발아율
④ 발아보증시한 ⑤ 생산연도(포장연월) ⑥ 재배 시 주의사항
⑦ 수입연월 및 수입자명 ⑧ 종자업등록번호
⑨ 생산·수입판매신고번호 ⑩ 품종보호 출원공개번호 또는 등록번호

※ 벼·보리·콩·옥수수·감자의 경우는 보증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묘목의 경우 규격묘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발아율(발아보증시한)을 표시할 수 없는 종자(영양체,묘목)는 제외합니다.

묘란?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을 뿌려 발아시킨 어린 식물체와 그 어린식물체를 서로 접목(接木)시킨 어린식물체

육묘업 등록

채소·화훼·식량작물의 묘(모종)를 생산하여 판매하려면 **시설·장비**를 갖추고 대표자가 **전문교육을 이수**한 후 주된 생산시설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육묘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종자산업법 제37조의2)

육묘업의 시설기준(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5조의2)

공통

- 개별기준의 시설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임차권 등 사용권을 확보할 것
- 두 가지 이상의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시설의 철재하우스 면적 기준은 재배하는 작물의 철재하우스 면적 기준 중 가장 넓은 기준을 적용할 것

개별

- 채소작물 또는 화훼작물 시설
  1. 철재하우스 면적: 990㎡ 이상일 것
  2. 환경조절장치: 환풍기, 난방기 및 관수장치를 갖출 것
  3. 병해충 차단시설: 방충망을 갖출 것
  4. 육묘벤치를 설치할 것
  5.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여 철재하우스 바닥과 토양을 격리할 것 • 콘크리트 깔기 • 부직포 깔기 • 자갈 깔기 • 보도블록 깔기
- 식량작물 시설
  1. 철재하우스 면적: 250㎡ 이상일 것
  2. 환경조절장치: 차광장치와 관수장치를 갖출 것
  3.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여 철재하우스 바닥과 토양을 격리할 것 • 콘크리트 깔기 • 부직포 깔기 • 자갈 깔기 • 보도블록 깔기

교육기관

국립종자원	☎ 054) 810-1512
서울대학교 채소육종연구센터	☎ 02) 880-4945
경북대학교 친환경농업연구센터	☎ 054) 383-9796
원광대학교 식물육종연구소	☎ 063) 850-6829

묘의 품질표시

묘(모종) 용기나 포장에 다음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❶ 작물명 ❷ 품종명 ❸ 파종일 ❹ 생산자명 ❺ 육묘업등록번호

종자산업법 위반 주요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무등록 종자·육묘업자(종자산업법 제37조·제37조의2 위반)
-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 판매(종자산업법 제38조 위반)
- 수입적응성시험 미필 종자 수입 판매(종자산업법 제41조 위반)
- 보증을 받지 아니하고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종자산업법 제36조 위반)

종자산업법 위반 주요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과태료 (단위: 만원)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 및 묘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 (종자산업법 제43조 위반)	100	300	500	700	1,000
발아보증시한이 지난 종자,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종자 및 묘를 진열·보관한 경우 (종자산업법 제44조 위반)	10	30	50	70	100
출입, 조사·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종자산업법 제45조 위반)	100	300	500	700	1,000

종자산업법 위반 주요 행정처분

위반행위	위반횟수별 행정처분기준		
	1회	2회	3회 이상
신고하지 않은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종자산업법 제38조 위반)	영업정지 90일	영업정지 180일	등록 취소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종자 또는 묘를 판매·보급하는 경우(종자산업법 제43조 위반)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30일	영업정지 60일
종자업자가 종자관리사를 두지 않은 경우 (종자산업법 제37조 위반)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30일	등록 취소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지 않은 외국산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 (종자산업법 제41조 위반)	영업정지 90일	영업정지 180일	등록 취소

혁신문영기관
국립종자원 www.seed.go.kr

39660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19 (율곡동)

종자업·육묘업 등록 054) 912-0165~0167
종자·묘 부정·불법 유통 054) 912-0168~0170
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054) 912-0115

강원지원 033) 433-2515 경북지원 054) 858-9659
충북지원 043) 649-3733 경남지원 055) 355-2578
충남지원 041) 540-4131 제주지원 064) 900-2995
전북지원 063) 530-3651 동부지원 033) 336-6242
전남지원 061) 323-0702 서부지원 063) 861-2595

www.seed.go.kr

종자·묘 유통관리제도

혁신문영기관
국립종자원